의정정보 2012-10호

1. 최근 제·개정 법령 3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24

3.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100

4. 행복한 책읽기 128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042)606-5021

모 두 보 기

최근 제·개정 법령

1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5)
2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7)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4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12)
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14)
6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17)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6)
2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37)
3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39)
4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45)
5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55)
6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64)
7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75)
8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81)
9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92)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1 민간경력자(103명) 중앙부처 사무관 임명(102)
2 행안부, 불산가스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 시행(106)
3 올 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 통합(108)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110)
5 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113)
6 2012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개최(115)
7 모든 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가능(117)
8 추억의 가을 운동회(120)
9 행정안전부, 내년도 생활안전·방재R&D 예산 대폭증액(123)

행복한 책읽기…… 광해 왕이 된 남자(128)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1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5

2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7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4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12

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14

6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 17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19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1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12.9.21, 시행 2012.9.22〕

1. 제정이유

군인 및 군무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89호, 2012.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의 범위,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접종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 시기와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보건의료인의 범위(안 제2조)

1)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군 보건의료인의 범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 의료기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과 군무원으로 정함.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접종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1)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으로 하여금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 양상 및 진료 정보 등에 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의 종류, 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 시기 및 항목(안 제10조)〕

1)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역병에 대해서는 상병 진급일을 전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역병을 제외한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대상별로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2) 건강검진의 항목은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및 혈액검사 등으로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 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공포 2012.8.23, 시행 2012.8.23〕

1. 제정이유

지난 2011년 10월 초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바, 의혹의 내용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그 밖의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명이 청와대 대통령실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경호처의 사업인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배정된 예산이 초과되자 용도가 특정된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한편, 부지 소유자 유용희와 부동산 9필지를 매매계약함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예산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시형이 매수한 부분의 가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손해를 보도록 했다는 것으로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가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고위공무원들이 개입되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가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및 이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민주통합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12.9.21, 시행 2013.1.18〕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가 설립·경영하던 인천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147호, 2012. 1. 17. 공포, 2013.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안 제8조)

1)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관인 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등을 포함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나.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안 제10조)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다만, 법인회계의 기본금에 대한 총차입금의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고 총차입금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기초학문진흥위원회 및 장학·복지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1) 기초학문의 지원·육성과 장학·복지를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교직원의 임용 특례(안 부칙 제2조)

1)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파견 근무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남는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근무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1. 개정이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0858호, 2011. 7. 18.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에 대한 천거(안 제7조)

1) 개인·법인·단체 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무부장관의 심사대상자 제시(안 제8조)

1)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개인·법인·단체 등이 천거한 사람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도록 함.

3) 법무부장관은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추천(안 제9조)

1)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천거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공포 2012.9.14, 시행 2012.9.16〕

1. 개정이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48호, 2011. 9. 15. 공포, 2012. 9. 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체물의 등급 구분과 함께 덧붙일 수 있는 매체물의 정보 (안 제8조제3항 및 별표 1)

1)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덧붙일 수 있는 내용정보를 선정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범죄모방의 위험성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를 예측

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장치(안 제15조)

1) 전자간행물,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인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어 포장을 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이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안 제17조)

1)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이용차단의 실효성을 높임.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공표 방법(안 제20조)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업체명·대표자명 등을 공표할 경우 정보공표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1)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바.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시행 사업(안 제32조)

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사업으로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공포 2012.9.11, 시행 2012.9.11〕

1. 제정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0861호, 2011. 7. 18. 공포)에 따라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의 대상, 평정자, 평정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평정자료의 공개 및 이에 대한 평정대상자의 의견제출 및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규칙 본문의 “근무성적평정”을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 등 평정”으로 변경함(제명,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7조)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법관을 포함한 모든 판사를 근무성적 등 평정대상자로 규정함(제2조)

다. 평정대상자가 된 판사들에 대한 평정자를 규정함(제3조 및 별표)

라. 평정사항을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과 자질 등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평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마. 평정자료 공개, 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공개된 평정자료 및 평정결과의 요지에 대한 비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 2012.8.31, 시행 2012.9.1〕

1.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12.8.23, 시행 2012.8.23〕

1. 제정이유

보행자(步行者)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39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와 절차,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안 제2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보행자 길에 대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행자길 현황과 보도가 없는 도로 현황, 보행자 교통사고의 현황,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 실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등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함.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특별시장 등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기본계획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사업 범위 등(안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2)

1) 사업을 시행할 때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에 법률에서 정한 사업 외에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7개 사업과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 공원, 유원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가로 규정함.

2)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의 인가 또는 승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사업계획 등의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26

2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 37

3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39

4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 ····· 45

5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5

6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64

7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 75

8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81

9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92

1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 제정 이유

경제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의 양극화 심화와 빈곤, 그리고 환경문제가 지구와 인류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에서 공정성을 추구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그들의 가난 극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 더불어 잘 살자는 목적으로 “공정무역”이 윤리적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음.

“공정무역”은 기존의 국제무역 체계와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원조 프로그램만으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통해 생산자의 자립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형태로 인식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저개발국가의 빈곤 완화와 개발협력을 위해 공정무역이 원조나 기부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여 공정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무역을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낮으며,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서울시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수도이자 글로벌 경제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제3세계에 대한 공정거래와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공정무역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안 제5조).

나.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6조).

다.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등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10조~안 제14조).

마.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교육훈련,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안 제20조).

바.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공정무역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서울공정무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8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3.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4. 서울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단체로부터 매년 공정무역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받은 공정무역사업이 완료되거나 종료 시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정무역단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기여한 시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별도의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8조(교육 훈련)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 이해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서울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공정무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정무역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공정무역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4. 공정무역 관련 연구조사·교육·홍보·전파
5.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6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센터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정무역 판매마크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 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마크(이하 “판매마크)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마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판매마크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1. 제정이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채용 및 직무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추가경정 예산 편성(50,060천원)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옹호관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수행 등) ① 옹호관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9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되 학생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사무직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무직원은 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③ 옹호관은 센터의 사무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옹호관이 미리 지명한 센터의 사무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현행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범이 없으며,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규정이 과거 「장애인복지법」상의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데 불과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시장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시장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추후 협의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시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등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귀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서울특별시가 사회복귀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직업재활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자활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구현하고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직원교육)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귀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 및 직원교육 사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복귀시설 중 모범 시설
2. 서울시 인증지표기반 평가 결과 상위 시설
3. 직업재활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신청사 안에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시민청”을 개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청 관람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고, 특별전 등에 대해서는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람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시민청 안에서 흡연, 음주,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퇴관조치를 함(안 제7조)

다. 나눔장터, 문화예술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전시, 창작, 문화예술활동 등을 위해 시민청 전시실 등을 대관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 제17조)

1) 구　　성 : 10명~15명,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2) 자문사항 : 시민청 정책의 방향정립, 주요 사업계획 수립·변경 등

마. 시민청의 운영·관리 사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관람시간·휴관일·대관·관람료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세부적인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편성 예정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개선권고)

- 무료관람 대상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토록 하여 반영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협의완료(공공갈등진단표 제출)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8.23 ~ 9.13)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청(市民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시민청(市民聽)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청(市民聽)”(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시민청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이용료) ① 시민청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65세 이상의 어르신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
9. 여성결혼이민자
10.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시민청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민청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민청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청 정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시민청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시민청 소관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청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동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안은 시민청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연간 14백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이 있으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부서명 : 시민소통담당관　성명 : 유영섭 주무관(2171-2942)

5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정규직화 노력, 차별 금지 및 고충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7조~안 제10조)

라.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향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시장은 관내기업 중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화 전환 우수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 취업촉진 조치 등을 매년 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별첨)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광주광시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써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비정규직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시장은「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9조(차별금지)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 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 설치 등

제11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비정규직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 및 제13조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건비,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⑤ 수탁자의 선정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되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제14조(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등) ① 시장은 관내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융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제15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대한 첫 업무보고 이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법률 제1127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법률 제1127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⑥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에 따라 학생인권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교권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원예우에관한규정」제6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여 바람직한 교육문화의 정착과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교권”, “교권침해”, “교육활동”, “학교”, “교육분쟁”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권보호지원센터″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률지원단을 말함(안 제2조)

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교육당사자인 교육감, 학교장, 교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마.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폭력,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 교원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

바.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

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교육활동비 지원”, “행사참여 요구의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와「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교원이 예우 받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행하여지는 수업, 학생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3. “교권”이란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때 존중받아야 할 권위와 법률이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말한다.
4.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5. “교육분쟁”이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6. “교권침해”란 제3호에 따른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①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교원의 기본 권리) ①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원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지시나 업무 범위 외의 사적인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③ 교원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④ 교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⑤ 교원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⑥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시간 외에 자유롭게 연수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⑦ 교원은 근무 시간 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 과정의 재구성,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③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정규직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 이외의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 등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종교에 따른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7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4.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도·감독

④ 교육감은 교원이 제기한 민원과 공익 제보 내용을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보한 교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및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⑥ 교육감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교원 자격연수, 직무 연수 등에 교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일정 시간을 배당하여 운영한다.

제8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은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결산,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직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 배정,

전입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 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4. 학교장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의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6. 학교장은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 조건, 업무 분장 등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2.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동호회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3. 교원의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을 위한 예산 편성

4.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여건 확보

제9조(교원의 책무) ① 교원은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동료 교원 및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③ 교원은 학생·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권보호 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권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2. 교권보호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3.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조치에 대한 사항
4.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따른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5. 교권 관련 연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권보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둔다.

1. 교육분쟁 및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상담 제공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상담 제공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 지원 상담
6.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② 학교장은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직원이나 법률전문가 등이 해당 학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참석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교권보호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⑥ 교원보호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법률지원단과의 연계 운영) 교육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접수된 사항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률지원단과 연계하여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교육감에게 조정 신청한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교권보호위원회 처리 신청 사건에 대한 현장 실사

3.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

4. 그 밖에 교원의 권리 보호,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당사자에게 심의결과에 따라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교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권보호지원센터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사참여 요구의 제한) ① 교육감은 교원에게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6조(교권침해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 지원에 있어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우리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함으로써 일상생활 가운데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시·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의 한복의 날 지정과 고유명절의 한복입기 활성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한복착용의 육성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한복착용을 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덧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경기도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고유 명절) ① 도지사는 중추절 등 고유 명절에 도민이 한복을 좀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조례 : 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복”이라 함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원,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지하철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장료”라 함은 공공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라 함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한복착용 시책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장료 또는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인천도호부청사 등의 문화·유적시설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공연 등
4.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의한 자체 기획공연 또는 전시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안 제3조).

나. 가구산업의 지속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다. 가구산업 육성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안 제6조 및 제9조).

라. 가구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특별보증,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에 필요한 지원(안 제11조~제14조).

마. 가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신기술개발 보급 및 전문인력을 양성(안 제15조).

바. 가구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인증·시험 비용 지원(안 제16조)

사. 가구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안 제17조). 시민청 관람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고, 특별전 등에 대해서는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람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다.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내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목재·금속·가죽·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생산·유통하는 산업과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공급·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구산업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가구산업의 환경변화
2.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3.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4.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5.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가구제품의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구제품의 각종 시험·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가구유통단지 등 가구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육성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가구산업분야의 전문가(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구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제11조(육성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가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가구산업종합지원센터(이하"가구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대학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가구센터는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디자인 개발지원, 인력양성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소비촉진 및 마케팅지원, 친환경 인증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의 가구산업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구센터 이외의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에 일부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구산업 육성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3.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4. 가구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5. 가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가구산업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7. 가구산업 관련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단체 등을 통해 디자인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신기술을 관련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 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하는 중소 가구기업에 대해 각종 국제인증·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전략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글로벌 산업’, ‘전통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말한다.

1.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2.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등 글로벌 산업

3. 금융산업, 항만물류산업, 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영상·정보기술(IT) 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4.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 산업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전통산업

제6조(육성사업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2조의 전략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4. 기술개발 지원

5.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7. 전략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유휴시설 처리

8. 전략산업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기술개발·상표개발 및 인력제휴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에 필요한 융자 및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2009년부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

○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음(안 제3조 및 제4조).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실비보상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 도지사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 일자리 우수기업에 인증현판 교부 및 기업홍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등 간접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덧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 확대 및 근로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과장, 기업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 단체가 추천하는 자

2. 일자리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3. 도의회가 추천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도의원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수당)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인증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경기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
6.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단,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3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생략)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1 민간경력자(103명) 중앙부처 사무관 임명 ····· 102

2 행안부, 불산가스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 시행 ····· 106

3 올 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 통합 ····· 108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 110

5 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 ····· 113

6 2012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개최 ····· 115

7 모든 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 117

8 추억의 가을 운동회 ····· 120

9 행정안전부, 내년도 생활안전·방재R&D 예산 대폭증액 ····· 123

1 민간경력자(103명) 중앙부처 사무관 임명

- 행정안전부, 2012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합격자 발표 -

◇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최종합격자 103명의 명단을 10월 12일(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발표**하였다.

○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민간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 지난해에는 여성 1등 항해사, 중동지역에서 근무한 건설회사 직원 등 91명을 선발, 35개 부처에 배치되어 근무.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도입하기 전에는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구 특별채용)을 각 부처별로 사정에 따라 수시로 선발함으로써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특히, 부처에서는 현장 경력보다 학위나 자격증 등 소위 스펙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다양한 현장 전문가를 적극 선발하기 위해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부처 수요를 받아 일괄**하여 선발해오고 있다.

◇ 올해 "민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5월 원서접수에서 총 **3,109명이 출원**하여 평균 2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의 총 3차에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103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 금년도 최종 합격자 103명 중 **여성의 비율은 41.7%**이고, **평균 연령은 35.4세**였으며, 20대가 3.9%, **30대가 84.5%**, 40대가 9.7%, 50대가 1.9%를 차지했다.

※ '11년도 합격자 평균 연령 : 36.2세, 여성 비율 : 26.9%

○ 또한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8.1년의 경력**을 보유하였으며, 10년 이상이 30.1%, 5년 이상~10년 미만이 42.7%, 5년 미만이 27.2%로 나타났다.

◇ 이번 시험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일했던 **현장 경력자들이 다수 합격**했다.

○ **'사회복지시설 관리정책'** 분야 합격자 **임동민(남, 32세)** 씨는 13세가 되기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받았으며, 학업을 마친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해온 **현장전문가**이다. 앞으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순화** 등 **복지정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외식산업 진흥정책'** 분야에 합격한 **정찬민(남, 40세)** 씨는 (주)오뚜기에서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내 최초의 가정용 유지제품을 개발**하는 등 **30여종의 식용유지제품**(마가린, 식용유, 참기름 등)을 **개발**하였으며, 마케팅을 활용한 시장 파악력, 기술 영업을 통한 대외 업무추진 협상력 등을 두루 갖춘 **외식산업 전문가**로 한식세계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 올해 가장 높은 125: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광역교통 정책'** 분야에 합격한 **강병구(남, 40세)** 씨는 토목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의 직위에 이를 때까지 **17년간**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빈띤교량 건설, 하노이-노이퐁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현장에서 외길을 걸어온 광역교통 전문가**이다.

○ **'항공사진 보안정책'** 분야에 합격한 **이상훈(남, 34세)** 씨는 **13년간 지리정보·측량분야**에서 GIS 연구개발과 정책지원, 기술기획, 연구 및 국제표준화 업무에 이르기까지 **공간정보관련 업무를 골고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평소 국가공간정보산업 및 보안 분야에 이바지하는 것을 꿈꿔오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여 국토해양부에 근무하게 되었다.

◇ 또한 **이색적인 이력**으로 눈길을 끄는 합격자들도 있었다.

○ **'아랍어권 지역외교'** 분야 합격자 **유성재(남, 38세)** 씨는 한화건설 사우디 법인 등 중동아프리카 관련부서에서 **아랍 현지의 건설현장**을 누비며 건설수주·해외인력관리·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봉사활동으로 모리타니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랍어로 정보기술(IT)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랍지역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아랍 전문가**이다.

○ **'섬유분야 특허심사'** 분야에 **최고령**으로 합격한 **심유봉(남, 52세)** 씨는 (주)코오롱 기술연구소에서 섬유소재 원단개발과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학에서 13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섬유 관련 이론 및 과목을 강의한 바 있는 **현장실무경험과 이론적인 지식을 모두 갖춘 섬유분야전문가**로서 이번 시험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 지식산업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미술조사 연구 및 기획'** 분야 합격자 **손주영(여, 33세)** 씨는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프랑스 국립대학과 영국정부의 장학생으로 선발

되어 해외 유수의 국립미술관들을 경험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한국의 차세대 디자인리더상'**을 연차 수상한 바 있는 전시기획 전문가로서,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자료조사 연구 및 전시기획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 **'동물질병 연구'** 분야에 합격한 **유광수(남, 39세)** 씨는 바이러스학을 전공한 수의사로서 양돈장 등 야외농장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실질적인 가축의 사양이나 환경적인 부문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동물 질병분야의 전문가이다. 동물약품제조사, 국제백신연구소 등에서 **소와 돼지의 호흡기질환 및 소화기질환의 백신개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인수(人獸)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일할 예정이다.

◇ 합격자들은 앞으로 부처에 배치된 후, 내년 4월부터 2012년도 **5급 공채 합격자들과 공동**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약 10주간 이수하게 된다.

○ 이를 통해 그동안 경력경쟁채용자(구 특별채용자)들에게 다소 부족하였던 공직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5급 공채자들과 대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의 다양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작년 처음 도입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가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 "올해로 도입 2년째를 맞는 본 제도를 **민간경력자의 공직유입 통로로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2 행안부, 불산가스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 시행

◇ 행정안전부는 경북 구미 산동면 일원 불산가스 누출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2.10.8)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에 준하는 지방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산가스 누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경상북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재산상의 손실로 인하여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 누출 가스로 인해 자동차 등이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며,

- 창고, 축사, 자동차 등의 부식으로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

○ 농작물, 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창고·축사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안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올 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 통합

- 고용·사회복지 관련 26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

◇ 올해 11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 2011년 장애인 현황(추정수) : 2,683,477명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 말부터는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인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첨부하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2011년도 구인·구직신청 현황 : 4,266,286건(이중 구인신청 약 175만 건)

○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스템이 개선된다.

* (현재) 인터넷(민원24)을 통해 증명서 신청만 가능, 발급·수령을 위해서는 시군구/읍면동 방문

○ 내년부터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 (현재) 인터넷은 신청만 가능(신청 후 인근 시군구/읍면동에서 수령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 고용주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할 때, 보험료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2013년 말까지 납부방법을 개선해 납부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월100만원 미만 체납보험료에 한하여 신용카드 납부 허용

*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또한,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의 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원제도를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 관련부처 연락처**》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폐지 · 고용·산재 보험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2-6902-8448) 고용보험기획과 (02-2110-7231)
· 장애인등록증과 고속도로 할인카드 통합 ·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폐지 · 보육교직원경력(재직)증명서 읍면동 발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2-2023-8668)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38)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43)
· 결혼중개업등록증 영문 병기하여 발급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02-2075-8736)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부진공기업 경영진단 실시 -

◇ 행정안전부는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발전과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 지난 5월~8월까지 행정안전부는 시·도 공기업(47개)을, 시·도에서는 시·군·구 공기업(172개)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27개반 162명, 공인회계사, 교수 등)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 평가항목 : 리더십/전략, 경영효율화, 경영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도

○ 이번 평가에서는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지표의 비중(55→58점)을 높이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 2011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 도시철도공사는 수송인원 증가(3.46%), 영업수지비율 개선(58.83% →61.28%) 등으로 전년에 비해 경영성과가 다소 향상되었으나, 낮은 요금 현실화율(55%)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도시개발공사는 적자기업 감소(5→2개), 당기순이익 확대(3,861억 → 7,724억) 등으로 전년에 비해 경영성과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분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나머지, 시설관리공단 등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영성과를 나타냈음

◇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은

○ 총 219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이 25개(11.4%), '나'등급 64개(29.2%), '다'등급 92개(42.0%), '라'등급 28개(12.8%), '마'등급 10개(4.6%)로 나타났다.

- 7개 분야별로 '가'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으로는 도시철도에서 '서울메트로', 도시개발은 '대전도시공사'와 'SH공사', 시설관리의경우 '부산시설공단(광역)', '송파구시설관리공단(기초)' 등 8개 기관, 환경시설은 '인천환경공단', 기타공사·공단의 경우 '제주관광공사(광역)', '창원경륜공단(광역)', '창녕군개발공사(기초)', 상수도는 '서울시(광역)', '전북 완주군(기초)' 등 5개 기관, 하수도는 '경북 구미시(기초)' 등 5개 기관이다.

◇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성과급이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사장(또는 이사장)과 임원의 연봉조정에도 반영된다.

《 **지방공사·공단 성과급 지급기준** 》

(성과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성 과 급 지 급 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사 장	임 원	직 원	
'가'	301～450%	201～300%	201～300%	-
'나'	201～300%	151～200%	151～200%	-
'다'	100～200%	100～150%	101～150%	-
'라'	0%	0%	10～10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마'등급(5개기관)은 성과급 0% + 사장·임원 익년도 연봉 5~10%삭감
'라'등급(15개기관)은 성과급 0%(단, 직원은 10~100%) + 사장·임원 익년도 연봉 동결

○ 또한, 평가결과 하위 공기업, 3년 연속 적자 또는 영업 손실 확대로 재무구조가 나빠진 공기업 등 총 7개 지방공기업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반이 정밀진단을 실시(10～12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이 시달될 계획이다.

* (진단대상기관) 화성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옥천군상수도, 음성군하수도

◇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엄정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과 고객서비스 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 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 주소에 동·층·호 사용 가능-

◇ 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000동 000호 (삼산동, 00아파트)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4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도로명주소법('11.8.4) 및 시행령('11.12.30)」 개정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임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자

○ 상세주소는 **동·층·호의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하여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층·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공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 **2013년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은**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동·층·호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도록 했다.

※ 예시) 101동, A동, 1동 → 101동 / 지층1호, B01호, 지1호 → 지하1호

◇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⑥ 2012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개최

- 문경새재에서 10월 6일(토)~7(일) 이틀간 열려 -

◇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이틀 동안 문경새재도립공원(제1관문 앞 광장)에서 「2012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를 개최했다.

※ 주최 : 행정안전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주관 : 경상북도

◇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박람회는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홍보, 마을기업간 경영노하우 등 정보교류 및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 16개 시도의 총 141개 마을기업은 각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통해 마을기업을 소개했다.

◇ 이번 「2012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은

○ **마을기업 정책홍보관**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을기업의 비전과 목표, 마을기업의 유형, 우수마을기업을 소개

○ **마을기업 컨설팅관**은 '대구경북마을기업통합지원센터' 등 16개 시도 중간지원기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마을기업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쇼핑), '코레일유통(주)'에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쇼핑몰 입점상담 실시

○ **마을기업 체험관**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아하'(경기 가평)는 바리스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올리고'(충남 당진)는

단호박 쿠기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

○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마을기업 세미나**에서는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 아울러, 마을기업 ‘(주)통인커뮤니티’ 정흥우 대표(서울 종로)가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시장상인회 간 공동체 회복 사례를 발표하고,

- 나뭇잎 하나로 연간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본 도쿠시마현 소재 마을기업 ‘이로도리’의 요코이시 도모지 대표가 마을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 **부대행사로** 문화마을기업인 ‘조선그루브’(대전 유성)와 ‘송화촌 공동체’(광주 남구), ‘국악나루’(서울 강동)에서 퓨전재즈, 다문화 춤사위, 전통국악 등 다양한 음악공연을 펼쳤다.

○ 이외에도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게임, 보물찾기, 윷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 행정안전부 이삼걸 제2차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마을기업 박람회는 국민들의 마을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마을기업인들에게는 홍보마케팅을 직접 경험**하고 마을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해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7 모든 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 행정안전부와 10개 신용카드사 업무협약 체결 -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 민원실을 방문한 A씨는 수수료 400원을 내기 위해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없었다. 그래서 현금을 찾기 위해 한참 떨어진 현금인출기(ATM)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거스름돈으로 받은 9,600원도 보관하기 번거로웠다.

(Q)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줄 수는 없을까?

◇ 행정안전부는 2013년 말까지 244개 全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카드결제 가능 지방자치단체 수('12. 4월 기준) : 244개 중 93개(38%)

○ 10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과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카드(이상 가나다순, 이하 '신용카드사') 등 10개 신용카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12.4월 기준, 93개)를 제외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만 받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7장의 신용카드 보유,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이 62.9%에 달함

○ 이와 관련,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민원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인 점, 카드 수수료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 현금납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47건 접수(국민신문고, '09년~'11년)**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실태조사(3월~4월),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신용카드사와의 협의(8월)를 거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 이로써 2013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카드결제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 1천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확대 관련, "민원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수수료 출납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 고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

□ 추진 배경

○ 국세·지방세 등은 카드납부가 가능하나, **민원수수료**(방문시)는 **현금결제만 가능**하여 민원인 불편 발생

*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요청 민원 접수(총 47건, '09년~'11년)

○ **국회·언론** 등에서도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필요성** 지속 **제기**

* 언론 등에서 공공요금 카드납부 필요성 제기('09. 9월, 연합뉴스 등)

▪ (도입현황) 244개 자치단체중 **93개 자치단체(약 38%)**에서 카드결제 시행중('12. 4월)
▪ (미도입 사유) ① 카드수수료, 단말기 등 **비용부담**, ② 대부분 **소액**이라 카드결제에 부적합, ③ 수수료 정산에 따른 **업무량 증가** 順
▪ (카드수수료율)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수료 격차가 큰 편**

□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

○ **(확대 방안) 2013년까지 전 자치단체**(244개)**에 카드결제 도입확대 목표**

행안부 / 10대 카드사	자치단체간 불균등한 카드수수료율 조정	자치단체	조례 등에 카드결제 근거 마련
	소액결제 허용		카드수수료 지급 예산 확보

- **(행안부-카드사)** 주요 10개* 카드사 협의, 자치단체간 불균등한 카드수수료율 조정, 자치단체 카드결제 도입 적극 지원

*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씨티은행·외환은행·하나SK·현대 참여

- **(자치단체)** 조례 등에 카드결제 근거명시, 카드수수료 지급예산 확보·도입

○ **(도입일정)** '12년말 19개, '13년 132개 자치단체에서 카드결제 도입 예정

□ 향후 계획

○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확대 계획**」 **자치단체 시달**(10월 초)

○ 자치단체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카드수수료 **예산 확보**(10월~12월)

○ 각 자치단체 도입일정에 따라 카드결제 시행(~13년), 행안부는 점검 및 지원(연중)

8 추억의 가을 운동회

- 국가기록원, 10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월 「이달의 기록」으로 '가을 운동회'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10월 16일(화)부터 나라기록포털(http:// contents.archives.go.kr)에서 서비스 한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등학교 운동회를 비롯한 다양한 가을 운동회 모습을 담은 것**으로, 동영상 13건, 사진 27건 등 총 40**건**이다.

▸ **동영상 13건**
- 학생운동회 : UN의 날 기념운동회(1960), 농촌의 가을-운동회(1963), 서울대 체육대회(1967), 초등학교 운동회(1986) 등
- 사회인운동회 : 제1회 어머니 대운동회(1957), 문화인 체육대회(1963), 언론계 종사자 친선체육대회(1967), 한민족 체육대회(1989) 등

▸ **사진 27건**
- 학생운동회 : 남녀 중고등학생 체육대회(1953), 이화여대 문리대 체육대회(1962), 경희초등학교 운동회(1976) 등
- 육해공군 체육대회(1954), 철도 제63주년 체육대회, 문화인 운동회(1963) 등

◇ 가을이 무르익으면 학교와 직장 등에서 가을 운동회가 펼쳐졌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가을하늘 아래 열린 학교운동회는 어린이보다 어른들을 더 설레게 하는 마을잔치였다. 또한 직장인 운동회, 어머니 운동회 등 각계각층의 사회인 운동회는 일상의 피곤함을 벗고, 동심으로 돌아가 가을을 만끽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 **학교 운동회에 관한 기록**에서는 한 농촌에서 마을잔치처럼 열린 초등

학교 운동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온 유치원생들의 꼬마 운동회, 유엔 회원국의 가장행렬을 곁들인 유엔의 날 기념 중·고생 운동회, 재미있고 화려한 응원을 자랑하는 대학 운동회 등 학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가을 운동회 풍경을 볼 수 있다.

- 또한 지금도 운동회에서 빠지지 않는 달리기, 줄다리기, 구기종목 등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사라져 가고 있는 기마전, 차전놀이, 짝 체조 등 이채로운 종목들도 만날 수 있다.

○ **사회인 운동회에 관한 기록에서는** 1950년대 고단한 살림살이에서 벗어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의 운동회를 비롯해, 1960년대 문화인, 언론인,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서 벌인 운동회, 1989년 재외동포들을 위해 처음 열린 한민족 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회인 운동회 모습을 볼 수 있다.

- 이 밖에 1963년 서울경찰 체육대회에서 오토바이 묘기를 하고 있는 경찰관, 매년 철도창설 기념일에 열린 철도청 체육대회, 문화인 운동회에서 다양한 분장을 하고 열띤 응원을 벌이는 응원단 등 가을 운동회의 여러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 추경균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지난 날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가을 운동회 풍경을 기록을 통해 되살려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 고 주요 사진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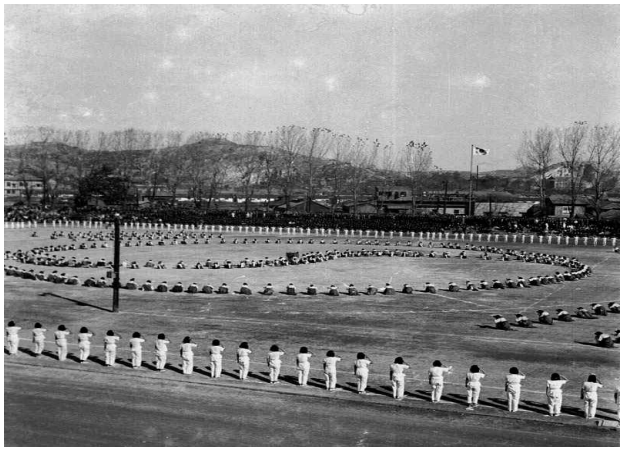

(남녀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짝체조, 1953년)

(남녀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참가모습, 1953년)

(경희초등학교 운동회 박 터뜨리기, 1976년)

(경희초등학교 운동회 기마전, 1976년)

(육해공군 체육대회 개회식, 1954년)

(제1회 어머니 대운동회 달리기, (1957년)

9 행정안전부, 내년도 생활안전·방재R&D 예산 대폭증액

- 어린이·여성 등 성범죄 예방 및 미래 재난 선제적 대응 강화 -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조 2,317억원 증액(6%)한 39조 6,64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5조 5,385억원, 국가부담금 2조 474억원, 인건비·기본경비 2,693억원, 사업비 1조 8,096억원

◇ 내년도 예산안은 ⅰ)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 ⅱ)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ⅲ) 낙후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먼저, 국민 생활안전 강화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12년750억 → 13년1,039억, ↑289억(39%증)〕

《2013년 생활안전 및 방재R&D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안	증감
계	750	1,039	↑289(39%증)
▪ CCTV 등 설치	445	615	↑170(38%증)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228	280	↑52(23%증)
▪ 방재R&D	77	144	↑67(87%증)

1)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12년445억 → 13년615억, ↑170억(38%증)

○ 최근 어린이·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한다(12년290억 → 13년416억).

※ '11년까지 10,775개소 설치 '12년 2,800개소 설치, '13년 3,980개소 설치 '14~'15년 7,305개소 설치 예정

○ 또한, 설치된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범죄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를 33개소 확대 설치한다(12년 155억 → 13년 199억).

※ '11년까지 61개소 설치 '12년 27개소 설치, '13년 33개소 설치, '14~'15년 109개소 설치 예정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12년 228억 → 13년 280억, ↑52억(23%증)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331개소에 설치한다(12년 129억 → 13년 149억).

○ 또한, 교차로에서의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회전교차로도 93개소에 설치한다(12년 99억 → 13년 131억).

3) 방재R&D : 12년 77억 → 13년 144억, ↑67억(87%증)

○ 기후 변화 등으로 재난양상이 대형화·복합화·다양화됨에 따라 신종·복합 재난에 사전대비하고 과학적 원인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방재기술연구개발*(12년 71억 → 13년 99억), 방재실험시설 구축** (12년 6억→ 13년 45억) 등 방재R&D에 144억원을 편성하였다.

* 방재기술연구개발 : 태풍·호우·산사태 등 풍수해 대응기술개발, 지진재해대응 기술개발, 미래 신종·복합 재난 예측기술개발 등

** 방재실험시설 구축 :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 및 배수시설 성능 평가실험을 위한 도시홍수 실험동, 급경사지(산사태) 붕괴원인 분석을 위한 실험동 등 구축

※ 재난 연구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이었던 "방재연구소"를 행안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28명→57명) 개편('11.10.25)

◇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12년]139억 → [13년]156억, ↑17억(12%증)〕

1) 개인정보 보호 : [12년]70억 → [13년]76억, ↑6억(9%증)

○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12.3)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및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강화([12년]25억 → [13년]30억)하고, 개인정보 교육·홍보([12년]14억 → [13년]15억) 등도 적극 실시한다.

※ 개인정보 실태점검·침해신고센터운영(30억), IPIN 서비스제공·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26억), 개인정보 법·제도개선 및 분쟁조정운영(5억),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지원 등(15억)

2) 정보화 역기능 대응 : [12년]69억 → [13년]80억, ↑11억(16%)

○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률을 줄이기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5세～49세까지 인터넷 중독률 : 7.7%(3,044만명 인터넷 이용인구 중 중독자 234만명)

○ 또한, 사이버 폭력, 음란물 유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학생, 성인 등 104만명을 대상으로 정보윤리교육도 실시한다.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 유아·아동(11만명), 청소년(23만명), 성인(16만명)

※ 정보윤리교육 : 유치원 1,000개교(4만명), 초중고 정보윤리학교 400개교(90만명), 성인대상 주민센터·평생교육기관(시·구립 평생학습원 등) 등 100개 기관(10만명)

◇ 또한, **지역녹색성장 촉진, 접경·도서지역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1) 자전거인프라 구축 : 461억

○ 국토종주 자전거 길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생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자전거 이용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강원권역 144km, 100억)을 본격 추진한다.

※ 동해안 자전거길(고성 통일전망대~부산 을숙도) : 총 720km를 3개 권역(강원·경북·부산울산)으로 구분하여 `15년까지 단계별 조성추진 계획

- 강원지역 구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 240km 중 '12년까지 96km(95억)를 조성하고, '13년에 나머지 144km(100억)를 완공 예정

○ 또한, 자전거 이용문화의 정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캠페인 사업 등(26억)도 적극 추진한다.

2) 지역공동체 일자리 : 423억

○ 국제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과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1.5만명(323억), 지역 특산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한 마을단위 기업 육성 지원 410개소(100억) 등

3) 접경·도서지역 지원 : 2,172억

○ 남북분단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에 적극 투자한다.

※ 특수상황지역개발(1,994억 / 도서·접경(인천, 경기, 강원)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등),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91억 / 자전거길·트레킹 조성),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87억 / 동서녹색평화도로 구축)

4) 주한미군 관련 지원 : 2,190억

○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지역발전 촉진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06년 ~ '17년)에 따라 주변지역 도로개설(1,040억), 반환 공여구역 부지매입(818억),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305억), 평택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27억)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201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 복 한 책 읽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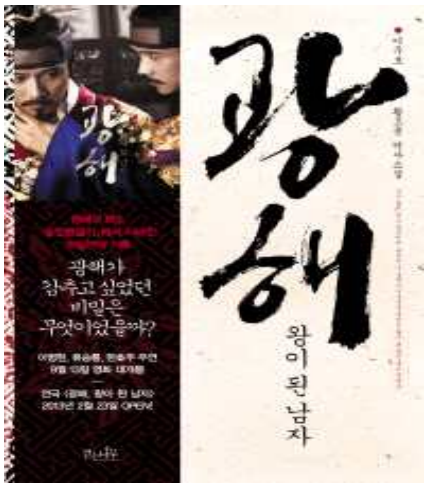

□ 도서명 : 광해 왕이 된 남자
□ 저자명 : 이 주 호
□ 출판사 : 걷는나무
□ 출판일 : 2012. 9. 8
□ 페이지 : 300쪽
□ 가 격 : 13,000원

□ 책소개

백성을 섬기는 진짜 왕을 만나다!
이병헌, 한효주, 류승룡 주연의 영화《광해, 왕이 된 남자》와 동시에 기획된 역사소설 『광해, 왕이 된 남자』. 영화와 다른 충격적 반전과 결말, 왕과 정치의 의미를 다시 묻는 팩션으로, 승정원일기에서 사라져 버린 광해군 8년 15일간의 행적을 그리고 있다.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 독이 든 음식을 먹고 광해가 의식을 잃은 사이,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신 왕 노릇을 하게 된 천민 하선을 통해 조선 정치판의 비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신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광해, 그를 지키려는 도승지 허균, 백성의 삶을 돌보려는 하선, 왕의 여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잃어야 했던 중전, 제 이익 불리기에 바쁜 조선 세도가들 등을 둘러싼 정치적 암투가 긴장감 넘치게 펼쳐진다.

□ 출판사 서평

광해군 8년, 모두가 꿈꿔 온 또 한 명의 왕이 있었다 이 책은 광해가 의식을 잃은 사이 광해와 똑같이 생긴 천민 하선이 대신 왕 노릇을 하면서 목격하게 되는 조선 정치판의 비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독살의 두려움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임금 광해와 그를 지키려는 도승지 허균, 광해의 대역 하선, 왕의 여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잃어야 했던 중전을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암투를 긴장감 있게 펼쳐 놓는다. 그리고 백성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돌보는 천민 하선과 제 이익 불리기에 바쁜 조선 세도가들의 대립을 통해 진정...

광해군 8년, 모두가 꿈꿔 온 또 한 명의 왕이 있었다

이 책은 광해가 의식을 잃은 사이 광해와 똑같이 생긴 천민 하선이 대신 왕 노릇을 하면서 목격하게 되는 조선 정치판의 비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독살의 두려움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임금 광해와 그를 지키려는 도승지 허균, 광해의 대역 하선, 왕의 여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잃어야 했던 중전을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암투를 긴장감 있게 펼쳐 놓는다.

그리고 백성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돌보는 천민 하선과 제 이익 불리기에 바쁜 조선 세도가들의 대립을 통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왕, 이 나라가 꿈꿔 온 왕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영화와 다른 충격적 반전과 결말

풍성한 캐릭터, 탄탄한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재탄생한 역사소설
영화와 함께 기획된 이 책은 영화와 다른 충격적 반전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재탄생한 역사소설이다. 러닝타임 동안 다 보여 줄 수 없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역사 기록에 근거해 풍부한 에피소드로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광해, 하선, 허균뿐만 아니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들의 행동과 내면 변화까지 섬세하게 그려냈다.

또한 왜 광해가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대동법과 호패법이 광해와 신료들의 권력 다툼에서 쟁점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끊임없이 역모 사건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허균은 왜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것인지 등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의구심을 독자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충격적 반전과 영화와 전혀 다른 결말로 오직 소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한다.

고교 역사교사들이 뽑은 '재평가가 필요한 역사 인물 1위'

지금껏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난세의 명군, '광해'를 재조명한 유일한 역사소설 광해군은 폭군이었다. 어좌에 오르자마자 형 임해군과 이복동생 영창대군의 사사를 묵인했고 그저 풍문일 뿐이었던 고변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수년간 조정을 피로 물들게 했다. 역모에 유난히 민감하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집착하였다.

신료들은 광해군의 이런 성향을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했다. 그로 인해 당파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올곧은 선비들이 억울하게 희생되기도 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이 더욱 곤궁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광해군의 전부는 아니다. 광해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마자 피난 계획을 세운 선조를 대신하여 분조를 이끌고 전장을 누빈 영웅이었다.

그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군량미를 나누어 주고 의병을 모집했으며 장군들을 독려했다. 보위에 오른 뒤에는 대동법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땅을 가진 만큼 조세를 부과하는 대동법은 농사꾼에게 전복을 바치라 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치와 형평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었다. 조정 신료들의 반발로 오래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분명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또한 광해는 '사대의 예'만을 따지며 명에 순종하는 것에 반대한 유일한 왕이었다. 국운이 쇠퇴해가는 명과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른 후금 사이에서 무의미한 희생을 줄이고 조선의 이익을 생각한 단 하나의 왕이었던 것이다. 광해는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처럼 폭군과 성군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기억된 광해군은 비정한 폭군의 모습뿐이다. 광해군 이후 인조 집권 시기의 사학자들은 광해군의 치적을 기록하는 것에 인색했다.

치적은 깎아내리고 실정은 빠짐없이 적었다. 그래서 후대의 많은 사학자들은 광해군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려지고 잊힌 왕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고교 역사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가장 재평가가 필요한 역사 인물'을 꼽는 설문조사에서도 광해군은 1위를 차지했다. 이 책은 왕권을 지키는 데 집착한 폭군 광해와 백성의 삶을 제 삶처럼 생각하는 천민 하선의 대립을 통해 진정한 왕의 모습과 정치의 의미를 묻는 역사소설이다.

『승정원일기』에서 사라져 버린 광해군 8년, 15일간의 기록

광해가 감추려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8년, 1616년 2월 28일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다. "可諱之事 勿出朝報。: 숨겨야 할 일들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왕이 숨기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하는 호기심에서 시작해 과감한 상상력으로 사라진 보름 동안의 행적을 재구성한 픽션이다.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 자신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 가던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왕 노릇을 할 인물을 찾으라고 지시한다.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 머물게 하고 기꺼이 친구가 되었던 괴짜 사대부 허균은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문객을 통해 왕과 똑같이 생긴 '하선'을 찾아낸다.

기방의 취객들 사이에서 걸쭉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하선은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끌려가 광해가 자리를 비운 하룻밤 동안 가슴 졸이는 가짜 왕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가 독으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허균은 하선에게 보름 간 광해를 대신하여 진짜 왕이 될 것을 명한다. 저잣거리의 만담꾼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버린 천민 하선은 허균의 지시 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말해서도 들켜서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왕 노릇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하선의 눈에 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았다. 조정의 신료들은 백성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명에 금은보화를 상납하고 몇 만의 병사쯤은 명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에게 직언을 했다는 죄로 참형시키고 유일하게 백성을 위하는 대동법은 신분제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했다. 혼란스러워하는 하선에게 허균은 말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정치일 뿐이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그러나 저보다 못한 사람을 가엽게 여길 줄 알고 제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켜 본 적 없는 하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점점 제 목소리를 내며 진짜 왕이 되어간다.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 이야기

모두가 꿈꿔 온 진짜 왕을 만나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400여 년 전 조선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권력 다툼에 매몰된 정치와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소외당하는 백성의 삶은 지금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현실을 관통하는 예리한 풍자,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눈만 마주치면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던 서인과 북인 사대부들이 대동법을 막기 위해 야합하는 장면에서는 망치를 들고 싸우다가도 세비를 올릴 때는 한마음으로 뭉쳤던 국회의원들이 떠오르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데도 명에 사대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료들의 행동에서는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강대국에 끌려 다니기만 하는 힘없는 외교력이 스쳐간다.

또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 왕권이 우선인 왕의 모습에서는 소외되는 국민의 삶이 겹쳐진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도가들의 모습에 지금의 한국 정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선의 정치는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500년 동안, 기존의 패권국이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신흥 강국이 패권국에게 도전하려 할 때 한반도는 예외 없이 전쟁터가 되었다. 14세기 후반의 원명교체, 16세기 후반의 임진왜란, 17세기 초반의 병자호란, 19세기 후반의 청일전쟁 등이 다 그러했다.

네 차례 모두 한반도는 자신의 ‘의사’를 변변히 표시하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 지렛대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강대국 간 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었다. 비록 내정에 발목이 잡힌 한계가 있지만 광해군은 명과 만주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악전고투 했던 임금이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 책은 제 잇속 챙기기에 바쁜 집권층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희생되는 오래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상치 않은 지금, 내정과 외교에 모두 탁월한 제2의 광해군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 추천의 글

“제2의 광해군을 기다리며 이 책을 읽었다”
지난 500년 동안, 새로운 강국이 태어날 때마다 한반도는 예외 없이 전쟁터가 되었다. 14세기 후반 원명교체기 홍건적의 고려 침입,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17세기 초반 병자호란, 19세기 후반 청일전쟁 등이 그러했다. 네 차례 모두 한반도는 자신의 ‘의사’를 변변히 표시하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 지렛대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강대국 간 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었다.

비록 내정에 발목이 잡혀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광해군은 명과 만주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악전고투했던 임금이었다. 그래서 역사 교사들이 광해군을 가장 재평가가 필요한 인물로 꼽는지도 모르겠다. 주변국들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지금, 내정과 외교에 모두 탁월한 제2의 ‘광해군’을 기다리며 이 책을 읽었다. -한명기(명지대 사학과 교수)

□ 줄거리

사림들의 권력 다툼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혼란이 극에 달했던 광해군 8년, 서인과 소북 세력의 견제와 독살 위협에 점점 난폭해져 가던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과 똑같이 닮은 자를 찾아오라는 밀명을 내린다. 기방에서 광대놀음으로 돈을 벌던 ‘하선’을 찾아낸 허균은 외모는 물론 목소리까지 놀랍도록 닮은 하선을 왕에게 데려간다.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끌려간 하선은 광해군이 자리를 비운 동안 왕의 대역을 하게 되는데....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2년 9월 24일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042) 606-5021 / 팩 스 (042) 606-5029